

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
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그간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(50%)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
- 이에 「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(8.16)」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안전진단 기준을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
- 그 후속으로 「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(12.8)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‘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’ 개정 추진

## 2. 주요내용

가.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

나.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

다.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적정성검토는 예외적으로 시행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주택정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>정책자료>법령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
주택정비과 (우편번호 30103)

- 전화번호: 044)201-3384, FAX : 044)201-5532